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

의 안 번 호 652

제출년월일: 2008. 11.

제 출 자:울산광역시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○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4조4호 및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환경보전 시책 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성·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·기본이 념·기본원칙·용어 정의 등 조례 전체의 원칙적·총괄적 사항을 규정 함.

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)

- 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구·사업자·구민, 언론·민간단체 등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함.(안 제5조부터 안 제8조)
- 법 제14조의4호에 따라 중구 환경보전계획, 자연환경의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함.(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)
- 환경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, 자원의 순환적 이용 추진, 환경보 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부터 안 제 15조)

68 (제116회-본회의제2차부록)

-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부담, 환경오염 행위자 규제조치, 원인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활동 등을 명시함.(안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
- 정보공개, 신고포상금 지급, 교육 및 홍보 등 정보공개와 구민참여 보 장 등을 규정함.(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)
-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함.(안 제25조부터 안 제33조)

3. 근거법규

-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호 및 제37조
- 4. 제정조례안: "따로 붙임"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의견수렴 : 의견 없음(2008. 9. 22 ~ 10. 13)

의안심사보고서

(의 안 번호 652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

2. 심사경과

○ 제 출 일 자 : 2008. 11. 11(화)

O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○ 위원회회부 : 2008. 11. 13(목)

○ 위원회상정 : 2008. 12. 1(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4조4호 및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·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· 기본이념·기본원칙·용어 정의 등 조례 전체의 원칙적· 총괄적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)
- 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구·사업자·구민, 언론·민간단 체 등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함(안 제5조부터 안

제8조)

- 법 제14조의4호에 따라 중구 환경보전계획, 자연환경의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함(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)
- 환경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, 자원의 순환적 이용 추진, 환경보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)
-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부담, 환경오염 행위자 규제조치, 원인분 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활동 등을 명시함(안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
- 정보공개, 신고포상금 지급, 교육 및 홍보 등 정보공개와 구민참여 보장 등을 규정함(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)
-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 치·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25조부터 안 제33조)

4. 근거법규

○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호 및 제37조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08. 9. 22 ~ 10. 13)

6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방영환)

○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 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함은 물론

- 우리구와 사업자 및 구민이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·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 보전을 우선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
- 이 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되나 다만, 제15조의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 구성체계

□ 구성체계 : 총 6장 33조

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및 환경보전 도모

제1장 총 칙

제2장 사회구성원들의 책무

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기본시책

- 목 적
- 기본 이념
- 기본 원칙
- 정 의

- 구의 책무
- 사업자의 책무
- 구민의 권리와 책무
- 학교·언론·민간단체 등의 역할
- 환경보전계획 수립
- 자연환경의 보존
-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·관리
- 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
-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
-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
- 환경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
- 규제조치
-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

제4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

제5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

제6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

-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
-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
- 정보의 공개
- 구민 참여 등
-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
- 환경교육 홍보 등

-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
- 기능과 구성
- 위원장의 직무
- 임기
- 위원의 해촉
- 회의
- 간사
- 수당 등

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고 한다)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·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생활환경을 조성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①구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.
 - ②구의 환경보전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,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.
 -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·시행되어야 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 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
 - 2. 생활환경, 자연환경, 지구환경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
 - 3. 국가 및 울산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, 국내·외 다른 지방자치단 체와 협력의 원칙
 - 4. 원인자부담의 원칙
 - 5.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
- 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환경"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 - 2. "자연환경"이란 지하·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

-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한다)를 말한다.
- 3. "생활환경"이란 대기, 물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- 4. "환경오염"이란 사업 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- 5. "환경보전"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6. "지구환경보전"이란 지구온난화, 오존층파괴, 해양오염,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.

제2장 사회구성워들의 책무

- 제5조(구의 책무) 구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와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.
 - 1. 대기, 수질,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 - 2. 야생 동·식물의 보호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 - 3. 인간과 자연의 공존, 양호한 경관의 보전, 역사적·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
 - 4.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·감 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
 - 5.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 - 7. 적정한 수준의 녹지 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

- 8.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 환경에 관한 사항
- 9.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- 10.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, 조직, 전문 인력의 충원,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- **제6조(사업자의 책무)**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,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.
 -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·가공·판매·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사업자는 구민·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구민의 권리와 책무)**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.
 - ③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,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 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
 - ⑤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,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⑥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학교·언론·민간단체 등의 역할)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 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민간 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

- 제9조(환경보전계획 수립)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보전계획(이하 "환경보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구·주택·산업·교통·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
- 2.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
 - 3.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·단계별 사업계획
 - 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
 - 5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
 -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민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 -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연환경의 보전) ①구와 사업자,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

- 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·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.
- 1.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,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- 2.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,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.
- 3. 야생 동·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.
- ③구는 공원·녹지·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 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지구환경의 보전)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지역 환경기준의 유지·관리) ①구청장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」로 정한 지역 환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 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
 - 2.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
 - 3.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
 - 4.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
- 제13조 (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 공환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

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기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 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구는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·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행사,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 보·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)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 경을 회복·복원할 책임을 지며,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규제조치)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 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8조(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)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

제19조(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)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

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,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 다.

제20조(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

- 제21조(정보의 공개)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- 제22조(구민참여 등)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감 시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제23조(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) ①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, 지급방법,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 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환경부 또는 울산광역시 지침에 준하여 한다.
- 제24조(환경교육 홍보 등) 구는 교육기관, 민간환경단체,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

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,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구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

제25조(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)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·학계·구민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중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
- 2.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
- 3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
- **제27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-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, 환경위생과장, 환경미화과장으로 한다.
 - ④위촉위원은 구의원, 환경관련 전문가, 학교, 단체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제2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부회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29조(임기)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3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
 - 2. 위원 자신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 - 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
 - 4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31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있다.
 - ②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32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이 된다.
 -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 - 2.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
 - 3. 회의 안건과 그 내용
 - 4.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
 - 5. 표결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회의 관련 사항
- 제33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자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

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